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에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관세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에 각각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2명, 9급 1명) 및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서울세관에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서울세관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에 각각 5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경관리 수행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목표를 반영하도록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제16호 중 “사항(서울세관의 심사2국장으로 한정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장의2의 제목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각각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4명”을 “25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관세청 소속기관”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60”을 “3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9”를 “3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49”를 “35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75”를 “5,0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75”를 “5,0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73”을 “4,608”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제20조, 제20조의 4, 제22조제5항,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3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별표 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0조의2제1항 관련)

1. 관세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심사국 1개 과	2명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2명
나. 인천공항세관 1개 과	10명
다. 부산세관 1개 과	10명
라. 인천세관 1개 과	5명
마. 서울세관 1개 과	6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명
2)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1명
3)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 ② (생 력)	제2조(소속기관)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 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 세인재개발원을 둔다.	③ ----- ----- ----- ----- ----- ----- 관 세국경인재개발원-----.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 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세청에 두는 보조 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u>기획재</u> <u>정부령</u> 으로 정한다.	제14조(위임규정) ----- ----- ----- ----- ----- ----- 재 정경제부령-----.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 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석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 (<u>관세인재개발원</u> 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u>기획재정</u> <u>부령</u> 으로 정한다.	제20조(하부조직) ----- ----- ----- ----- ----- ----- -- <u>관세국경인재개발원</u> ----- ----- <u>재정</u> <u>경제부령</u> -----.

제20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분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
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하
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 ④ (생략)
⑤세관의 관할구역과 지원센터
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 ⑥ (생
략)
⑦ (생략)
1. ~ 15. (생략)
16. 덤핑거래 심사 및 덤핑방지
관세 연례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서울세관의 심사2국장으
로 한정한다)

⑧ ~ ⑩ (생략)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
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

제20조의4(하부조직)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재
정경제부령-----.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정경제부령-----.

제24조(하부조직)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

사항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하부조직) -----

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의2 관세인재개발원

제26조의2(직무) 관세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7. (생략)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세인재개발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재정경제부령-----.

제26조(위임규정) -----

----- 재정경제부령-----.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26조의2(직무) 관세국경인재개발원-----

1. ~ 7.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② -----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세인재개발원에 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 재정경제부령-----

-----.

③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재정경제부령-----.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재정경제부령-----.

② -----
----- 재정경제부령-----.

----- 25명-----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

-----.

재정경제부령-----
-----.

② -----

----- 재정경제부령 -----
-----.

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u>관세청 소속기관</u>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u>기획재정부령</u>으로 정한다.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 ----- --- <u>관세청과 그 소속기관</u> --- ----- -----. ② ----- ----- <u>재</u> <u>정경제부령</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0</u>	<u>363</u>	+3
·	·	·	
·	·	·	
일반직 계	<u>359</u>	<u>362</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49</u>	<u>352</u>	+3
·	·	·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75</u>	<u>5,010</u>	+35
일반직 계	<u>4,975</u>	<u>5,010</u>	+3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73</u>	<u>4,608</u>	+3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